

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.

- 2004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,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, 12월 15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, “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”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 -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 - 교육감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,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(제3조제1항),

- 교육감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주관부서, 홈페이지 관리부서,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,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·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(제3조제3항),
-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고(제7조제1항),
-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중 특정사유에 해당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(제8조제2항),
-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(제10조제1항),
-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여야 하며(제14조제1항),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한다는(제15조) 것 등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“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”
 -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,

- “제5조(적용범위)”는 본 조례 전체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총칙적 규정에 해당되므로 제1장 총칙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-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는 「열린마당」의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“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”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